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차규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7.

발 의 자 : 차규근 · 신장식 · 김선민
서왕진 · 김준형 · 정춘생
박은정 · 강경숙 · 이해민
김재원 · 황운하 · 백선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「상법」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(이하 “감액배당”이라 함)을 익금에 불산입하되,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(財源)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8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이익잉여금을 재원(財源)으로 하는 금액

마. 그 밖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)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	제18조(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「상법」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(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)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.	8.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라. 이익잉여금을 재원(財源)으로 하는 금액</u>
<u><신 설></u>	<u>마. 그 밖에 실질적으로 이익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</u>